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57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기간 연장 (임광현·정태호의원안)	3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25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4. 9. 25.
- (3) 회 부 일 : 2024. 9.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하여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모든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결손금 중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하고 이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한편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이 가능한 기한이 5년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미국의 「연방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자본이익 내에서 통산 가능한 자본손실 중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또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주식 자본손실을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기간 연장 (임광현·정태호의원안)

법률 제17757호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개 정 안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87조의4) -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이월결손금*-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금융투자결손금 중 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하여 그 후 각 과세기간 과세표준 계산시 미공제된 것으로서 ② 확정신고, 결정·경정·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기간 연장 - (현행과 같음) -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이월결손금*-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금융투자결손금 중 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하여 그 후 각 과세기간 과세표준 계산시 미공제된 것으로서 ② 확정신고, 결정·경정·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 (현행과 같음)

* 임광현의원안 2024. 9. 25. 발의(의안번호 4257),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7)

☐ 2건의 개정안은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에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면서 이월결손금의 이월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 기획재정부는 3년의 이월공제기

간으로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¹⁾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출한 5년의 이월공제기간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5년으로 의결되었음.

그러나 금투세의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하는 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투자 이익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장기간의 시점에서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순자산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인별 담세력에 따른 조세 부과가 가능해질 수 있고, 납세자 간의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음.

둘째,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유인을 늘리고 모험자본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공제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양도손실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정부가 투자자의 위험을 공유(risk sharing)함으로써 투자자의 위험자산 투자유인을 늘리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는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릴 수 있고, 이는 모험자본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2020. 6. 25.

셋째, 자본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국가의 대다수는 장기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거나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적 기준에 보다 부합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3년간의 이월공제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영국·독일·호주 또한 무기한의 이월공제기간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개인용 자산의 경우 10년간의 이월공제기간을 허용하고 있음.

[주요국의 이월공제 제도 비교]

구분	이월공제
미국	· 이월기간 무제한 · 장단기 성격을 유지하며 다음 과세연도로 손실 이월공제
일본	· 3년 이월허용 · 상장주식·채권·펀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손실 이월공제
영국	· 이월기간 무제한 · 손실 발생 후 4년까지 신고 가능
프랑스	· 개인용 자산의 경우 10년간 이월 가능 · 사업용 자산의 경우 6년간 이월 가능
독일	· 이월기간 무제한 · 100만 유로까지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고 이후 소득의 60%만 공제 가능 · 소급 공제 한도는 100만 유로
호주	· 이월기간 무제한 · 소급공제 불가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2020.6.

□ 다만,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수의 안정성 및 변동성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금융투자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간으로 확대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수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월공제로 인하

여 금융시장의 주기 중 고점과 저점 시의 금융투자소득세 세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세수의 변동성이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금융시장의 금융투자상품 가격이 폭락하여 금융투자결손금이 대거 발생한 경우 회복기에는 이월된 금융투자결손금이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됨에 따라 세수규모가 제한적이었다가, 이월공제기간이 끝나는 무렵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해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세수규모가 크게 증가할 여지가 있음.

또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동일 유형의 양도소득의 손익통산 후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나 해당 결손금을 이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문 의 처

02)6788-5157

2)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